

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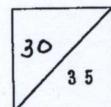
| 의안번호 | 회의차수 | 회의일자        | 제의자    |
|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
| 33   | 16   | 1995. 7. 20 | 총재 김명호 |

의안 「양도성예금증서 발행업무와 관련된 수신이율 및 부대조건」 개정

의결사항 「양도성예금증서 발행업무와 관련된 수신이율 및 부대조건」을 불임과  
같이 개정한다.

제의근거  
법규조항

제의취지 3단계 금리자유화의 일환으로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조건을 완화하고자  
본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



1

633

< 참고사항 >

**제의관계 법규조항 발췌**

한국은행법 제7조

① ( 생 략 )

- 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, 운영,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.
- 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, 지시를 발할 수 있다.

④ ~ ⑥ ( 생 략 )

한국은행법 제65조

- 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 기타 지급금의 최고율을 정할 수 있다.

② ( 생 략 )

「양도성예금증서 발행업무와 관련된 수신이율 및 부대조건」 개정(안)

| 현 행   | 개 정 (안)   | 비 고   |
|---|---|---|
| 1. 최고이율 :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| 1. ( 현 행 과 같 음 )  |   |
| 2. 만기 : 60일 이상 270일 이내(중도해지불가능). 다만, 은행법에 의한<br>금융기관을 상대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270일<br>이내로 함    | 2. 만기 : 30일 이상 270일 이내(중도해지 불가능)  | - 대고객 CD의 최단만기 단축<br>및 은행간 CD의 만기에 대한<br>별도 규정 삭제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최저발행금액 : 3천만원  | 3. 최저발행금액 : 2천만원  | - 최저발행금액 인하   |
| 4. 발행형식 : 무기명 할인식 양도가능증서  | 4. ( 현 행 과 같 음 )  |   |
| 5. 금융기관별 발행한도 : 금융기관의 자기자본, 예수금규모 등을<br>감안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범위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. ( 현 행 과 같 음 )  |   |
| 6. 취급금융기관 : 한국산업은행,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장기신용은행을<br>제외한 금융기관   | 6. ( 현 행 과 같 음 )  |   |
| 7. 기타 : 자행발행 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전 매입 및 담보취득과<br>60일 미만 만기 양도성예금증서의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<br>이외의 자에 대한 양도는 불가 | 7. 기타 : 자행발행 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전 매입 및 담보취득과<br>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의<br>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양도는 불가 | - 은행간 CD의 양도 제한 강화  |
| 8. 실시일자 : 1994. 7.18  | 8. 실시일자 : 1995. 7.24  | - 실시일자 명시   |
| ( 신 설 )   | 9. 경과조치 : 1995. 7. 23 이전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상대로<br>발행된 60일이상 만기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는<br>만기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        | - 실시일전에 발행된 60일이상<br>만기 은행간 CD에 대해서는<br>종전 규정에 따라 은행 이외의<br>자에 대한 양도 허용 |